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19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5조 1항)
- 나.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제22조)
- 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식물관련시설 및 군사시설 허용(안 제26조)
- 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 승인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허용(안 제36조)
- 마. 도시계획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이외지역은 용적을 400퍼센트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42조)
- 바. 온돌시공등에 관한 조항 삭제(제52조)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의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5.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6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2. 규모 : 2층 이하로서 높이는 8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
3.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기타 철거·해체가 용이한 구조

②제15조제4항제11호 2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 안에 설치하는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 천막 또는 철골천막 구조의 창고

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 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 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천막 또는 철골천막 구조의 창고
4. 간이 구조로 된 버건조장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차고
5. 낚시터, 유희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쉼터 용도의 건축물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제19조 제1항중 “면적 330제곱미터”를 “면적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건축사가”를 “건축사 또는 조경 기술 자격 취득자가”로 하고, 제2항중 “2배”를 “3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제15호,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식물관련시설
- 16. 군사시설

제27조 제11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자동차관련시설

제34조 제8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8. 판매시설

제35조 제1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의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 1. 단독주택

제36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 한다.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 한한다.)

제37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 공판장과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농어촌발전촉진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 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41조 “제8호 내지 제14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 제5호”로 하며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2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제46조 제4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 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 중 “16층”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를 “삭제” 한다.

제53조 제1항 본문 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 사유)
<u>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 한다.</u> 1. <u>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u> 2. <u>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사전결정</u> 3. <u>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②영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u>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2. <u>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u> 3. <u>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u> 4. <u>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u> 5. <u>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u>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9호의 “삭제”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건축법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 파주시건축조례 제5조의 기능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대로함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제16조(가설건축물) (신 설)		6. 영 제1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 용도의 콘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공장내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리하여 이들 시설물을 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신 설)			1. 용도 : <u>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u> 2. 규모 : <u>2층 이하로서 높이는 8미터 이하 이어야하며,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u> 3. 구조 : <u>조적조, 조립식구조, 기타 철거·해체가 용이한 구조</u>	
(신 설)			②영 제15조제4항제11호 2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u>공장안에 설치하는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 천막 또는 철골 천막구조의 창고</u> 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제19조(대지안의 조정) ①법제3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대지안의 조정) ①법제3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펴수 있는 구조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 천막 또는 철골천막 구조의 창고 4. 간이구조로 된 비건조장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차고 5. 뉴시터, 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쉼터 용도의 건축물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 법제(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서 식수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개	정	비	고 (개정 사유)
제21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조경기술자격 취득자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경공사비 산출을 조경기술자격 취득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경 식수금 예치 후 조경 미 실시(식재)로 인한 건축물 조경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조경 예치금의 상향 조정으로 건축물의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제22조(미של장식품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업무, 풍치, 미관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삭 제)		○ '95.12.30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문화예술진흥법으로 규정)	

화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 토록 조건부 심의되는 건축물 ②미술장식품의 권장시키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 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또는 설치 계획서는 별지와 같다. ③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한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할 수 있다. ④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제2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1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1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14 (현행과 같음) 15. <u>식물관련시설</u> 16. <u>군사시설</u>	제2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14 (현행과 같음) 15. <u>식물관련시설</u> 16. <u>군사시설</u>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가신설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10 (생 략) 11. <u>지동차관련시설(차고, 세차장, 지동차계좌원에 한한다)</u> 12.~16 (생 략)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10 (생 략) 11. 지동차관련시설(차고, 세차장, 지동차계좌원에 한한다) 12.~16 (생 략)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10 (현행과 같음) 11. <u>지동차관련시설</u> 12.~16 (생 략)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10 (현행과 같음) 11. <u>지동차관련시설</u> 12.~16 (생 략)	○ 주차장 부지 확보와 이와 연계된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용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7 (생 략)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7 (생 략)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8. 판매시설(농. 축.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9.~10 (생 략) 제3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단독주택(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 수산업에 종사하는자의 단독주택에한한다.) 2~ 9 (생 략) 10. 청소년시설 제3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자의 단독 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8. 판매시설 9.~10 (생 략) 제3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단독주택 2~ 9 (현행과 같음) 10. 청소년수련시설 제3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서 규정 삭제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내 사업계획승인대상 분이 아닌 다세대주택 및 연립 주택을 허용토록함.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형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3. ~ 7 (생 략) 8. <u>창고시설</u> 9. <u>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화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u> 10 ~ 13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u>(삭 제)</u> 9. <u>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계 화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u> 10 ~ 13 (현행과 같음)	제3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생 략) 1. ~ 10 (생 략)	제3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창고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분류되었기 조례에서 삭제 및 제9호는 용어 변경으로 개정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1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산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12. (생 략) 제4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 략) 1. ~ 7 (생 략)	1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산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4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1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농어촌발전촉진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2. (현행과 같음)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서 조항 변경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형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 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 13 (생 략)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 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 13 (현행과 같음)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 '97. 9. 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제14호 개정(용어 변경)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생 략) 1. ~ 13 (생 략) 14. <u>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u>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생 략) 1. ~ 13 (생 략) 14. <u>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u>	제4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u>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u>		
제4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할 거리) (생 략) 1. ~ 3(생 략) 4. 도시미관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시장이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할 거리) (생 략) 1. ~ 3(생 략) 4. 도시미관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시장이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할 거리)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도시미관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시장이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합벽개발을 용이 하게 함.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제47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생 략) ② 영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 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 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47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생 략) ② 영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 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 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47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생 략) ② 영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 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	
제52조(온돌의 시공등) ① 법제5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자 (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제52조(온돌의 시공등) ① 법제5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자 (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96. 12.30 개정으로 삭제 되었 으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2. 사단법인 온돌 시공협회 및 한국열관리 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설비 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삭 제)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	
③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삭 제)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 시공상 잦은 하지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 기술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5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 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5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 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공작물로 분류 설치가 용이하고 함

파주시건축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 사유)
1. (생 략) 2. <u>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u> <u>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u>	1. (현행과 같음) 2. <u>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u> <u>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시설 기타</u> <u>이와 유사한것.</u>			